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건축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사에게 필요한 높은 수준의 역량 및 윤리의식을 자율적으로 함양하여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도모하며, 국민 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과잉행정 방지를 위한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근거법령 : 건축사법

3. 주요내용

가. 건축사 협회의 임원과 조직 등 규정(안 제30조의11. 신설)

건축사협회에 대한 임원 및 조직 구성에 대한 사항과 협회내 총회·이사회·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의결사항을 규정하여 협회의 공공성 강화

나. 업무정지 및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개정별표)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별표2)과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3)에서 가중처분 누적회차 적용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혼란 최소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8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30조의6제2항 중 “건축사협회”를 “대한건축사협회”로 한다.

제30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11(임원 및 조직 등) ① 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건축사협회의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를 두고, 건축사협회에는 총회, 이사회, 윤리위원회를 두며, 시·도에는 지부를 설치한다. 기타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협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사협회 총회는 정관에 따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건축사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법 제31조의4에 따른 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한다)의 제정 및 변경

3. 예산 및 결산

4.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과 건축사협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건축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하며,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건축사협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윤리위원회는 위원 정원의 과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한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정관 또는 윤리규정 등을 위반한 회원의 징계와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건축사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징계를 심의·의결한다.

제31조 중 “건축사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사업종목은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3.사업”을 “3.사업 종목”으로 하고, 3.사업 종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업종목

가. 건축문화 선진화에 관한 사업

나. 건축물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업

다. 건축사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사업

라. 건축사의 역량 및 윤리의식의 강화에 관한 사업

마. 미래건축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업

바. 건축사 교육의 내실화에 관한 사업

사. 그 밖에 협회발전에 필요한 사업

부 칙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8(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 절차 등) ① (생 략)	제6조의8(건축사 자격시험의 응시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의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합격예정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증명서(합격예정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삭 제>
제30조의6(징계위원회의 소집 등) ① (생 략)	제30조의6(징계위원회의 소집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징계를 요청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징계의결을 요구한 경우 징계위원회는 해당 시·도지사 또는 건축사협회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징계의결 요구 내	② ----- ----- --- <u>대한건축사협회</u> ----- ----- ----- ----- ----- ----- -----

용과 징계위원회의 심의 기일
등을 징계위원회 심의 기일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③ (생략)

<신설>

-----.

③ (현행과 같음)

제30조의11(임원 및 조직 등)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건축사
협회의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를 두고, 건축사협회에
는 총회, 이사회, 윤리위원회를
두며, 시·도에는 지부를 설치한
다. 기타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은 건축사협회 정관(이하 "정관"
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는 정관에
따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건축
사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
다.

1. 정관의 변경

2. 법 제31조의4에 따른 윤리규
정(이하 '윤리규정'이라 한다)
의 제정 및 변경

3. 예산 및 결산

4.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
과 건축사협회 회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이사회는 정관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건축사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2. (생략)
 3. 사업
- <신설>

에서 정하는 이사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건축단체에서 추천을 받아 구성하며,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건축사협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윤리위원회는 위원 정원의 과반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한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며, 정관 또는 윤리규정 등을 위반한 회원의 징계와 법 제30조의3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건축사협회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징계를 심의·의결한다.

제31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사업 중목은 다음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사업중목
 - 가. 건축문화 선진화에 관한 사업
 - 나. 건축물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업
 - 다. 건축사의 부당행위 근절에

4.~11. (생략)	<u>관한 사업</u> <u>라. 건축사의 역량 및 윤리의식</u> <u>의 강화에 관한 사업</u> <u>마. 미래건축 경쟁력 강화에</u> <u>관한 사업</u> <u>바. 건축사 교육의 내실화에</u> <u>관한 사업</u> <u>사. 그 밖에 협회발전에 필요한</u> <u>사업</u> 4.~11. (현행과 같음)
--------------------	---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 (제29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하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 적용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처분기준이 같을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되, 그 합산한 업무정지 기간이 1년을 넘을 때에는 1년으로 한다.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여부 또는 공중(公衆)에 미치는 피해의 규모 등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중한 업무정지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 라.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1호	사무소개 설신고 효력상실			
나. 법 제18조의3에 따라 건축사사	법 제28조제1항제	사무소개			

무소개설자의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	2호	설신고			
다. 법 제19조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3호	효력상실 업무정지 12개월			
라.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 감리를 함으로써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4호	사무소개 설신고 효력상실 (업무정지 12개월)			
마. 연 2회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정지기간이 통틀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5호	사무소개 설신고 효력상실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바. 법 제23조제7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경우	6호	1개월	4개월	8개월	
사.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7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6개월
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28조제1항제8호				
1)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2)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비고: () 안은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 건축사보 및 실무수련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말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하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지난 처분은 가중처분 적용 차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과태료 부과 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1)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4)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5)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2호	10		
나.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1호	50	70	100
다. 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2)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3)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4) 신고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법 제41조 제2항제3호	5	10	20
라.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41조 제1항제2호	50		100